

서울특별시 영상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63
------	------

2016. 12. 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2016.12.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영상산업 지원사업은 서울시 영상 및 영화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주요 시책사업인 영화창작공간의 운영,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사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영화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중이며,

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 서울특별시 영상산업 지원사업

나. 위탁기간 : 2017. 1. ~ 2019. 12.

- ※ 의회일정을 감안할 경우(12월 동의안 의결) 기존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신규 위탁운영단체 선정이 곤란하여 기존 위탁운영기관과 90일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위탁사무 연장 조치 예정(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조3항)

다. 소요예산 : 3,470백만원 (2016년 기준)

- ※ 영화창작공간 1,700백만원,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755백만원,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1,015백만원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

○ 영화창작공간 운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0 DMC 첨단산업센터 내
- 연 면 적 : 4,576 m^2
- 입주대상 : 감독·PD(58명), 제작자(17팀), 시나리오 작가(42명)
- 사업내용
 - 시설 및 장비의 운영·관리
 - 입주자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설홍보 및 영화인 네트워크 지원

○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 지원대상 : 해외 장편영화, 다큐멘터리, TV제작물
- 사업내용
 - 해외 또는 국제공동제작 영상물 인센티브(제작비, 스카우팅비) 제공
 - 해외작품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참가, 프로젝트 초청투어 등 프로모션 수행
 - 로케이션 환경조성(DB구축 및 관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서울배경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독립 장·단편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상설관 운영자 등
- 사업내용
 - 서울 배경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및 사후관리
 -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 지원
 - 영화제를 통한 독립영화 제작지원
 - 독립영화 공공상영회 운영

바.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10. 1. 1. ~ 2011. 04. 07. (사)서울영상위원회
- 2차 : 2011. 4. 8. ~ 2013. 12. 31. (사)서울영상위원회
- 3차 : 2014. 1. 1. ~ 2016. 12. 31. (사)서울영상위원회

사.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시 영상산업 지원사업은 영상 및 영화관련 지식이나 추진 노하우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효율적 운영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 또한, 영상 관련 인프라 운영[영화창작공간]과 지원사무[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서울배경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영화관련 현장경험 및 역량이 축적된 전문단체(법인)을 통해 위탁운영 필요.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영상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업들에 대한 민간위탁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영상산업 지원사업의 현황과 민간위탁 추진 배경

- 서울시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대상사업은 영상창작공간 운영, 해외영상물 서울 로케이션 마케팅,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이며 그 외 민간위탁 사업으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이 있음.

<영상지원사업의 민간위탁 현황>

사무명	소재지	현원	규모	주요시설	위탁기간 (최초위탁연도)	재위탁 차수
영화창작공간 운영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	5명	▶4,576㎡ (1,2,5,8층)	창작실, 회의실, 자료실 등	'14.1.1.~16.12.31 (2010년도)	4차 (의회동의)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지원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	3명	<주요사업> ▶서울촬영 인센티브 ▶해외마케팅(프로모션 등)			
서울배경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	3명	<주요사업> ▶독립영화 제작지원 ▶공공배급망(상영회) 운영			
충무로영상 센터 운영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사 내	4명	▶371㎡ (지하1층)	아카이브, 편집실, 상영관 등	'15.1.1.~16.12.31 (2002년도)	9차 (의회보고)

- 영화창작공간은 연간 운영비 17억(16년 기준)이며 영화감독과 PD, 작가, 영화제작사에게 창작과 제작공간을 제공하고 기획개발비, 소재 개발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음.

<영화창작공간 개요>

- 소재지 : 마포구 성암로 330(DMC 첨단산업센터, 4,576㎡)
- 입주대상 : 영화감독·PD 58명, 작가 42명, 영화제작사 17팀
- 주요사업
 - 창작/제작 공간 제공
 - 창작 강좌 운영 : 정기 강좌, 오픈특강 등
 - 기획개발비 지원 : 원스톱지원(2층) 공간 및 시나리오 작가(1층) 입주자 20여명
 - 소재 개발 멘토링 지원비 : 100명, 200천원/회 지원
 - 영상 멀티마켓 : 다분야 작가와 기획·개발 그룹의 작품 피칭, 토론·미팅으로 작품 매칭 기회 제공
 - 1인 창작기업 지원 : 열악한 중·소제작사 지원을 위한 공간 제공, 마케팅, 회계 등 기업활동 지원 등

구 분	기획개발 공간			제작 공간	
	1층(작가존)	2층(원스톱 지원)	8층(일반지원)	5층(제작사 지원)	2층(1인창작)
규 모	653㎡	997㎡	1,709㎡	1,027㎡	190㎡
시 설 구 성	집필실, 자료실 등	창작실, 세미나실 등	창작실, 비즈니스지원실 등	제작실, 회의실 등	제작실 등
이용자	시나리오 작가(42명)	감독·PD(18명)	감독·PD(40명)	제작사(12팀)	제작사(5팀)
입 주 기 간	1년	1년	1년	8개월	3년

- 해외영상물 서울 로케이션 마케팅은 운영비가 연간 7억5천5백만원(16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촬영되는 해외 영화, 다큐, TV 제작물에 대한 제작비와 서울을 촬영지로 하는 영상물의 사전답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영화제 등에 대한 해외작품 유치에 위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음.
-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은 운영비가 연간 10억1천5백만원(16년 기준)으로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독립영화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독립·고전영화의 시사회와 개봉을 지원하여 영상콘텐츠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음.
- 당초 민간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영화창작공간 운영 등 3개의 민간위탁 사업은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서울시의 역할이 미비하고 사업성과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어서 2010년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였고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가 수탁기관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서울영상위원회 개요>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02. 2. 19.)
- 설립목적 : 국내·외 영화촬영 및 제작지원, 서울 영상산업 관련 사업 추진
- 소재지 : DMC첨단산업센터 내
 -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C동 114호
- 대 표 : 이장호(영화감독)
- 조직구성 : 임원 18인 / 1처 5팀 1센터(20인)

- 한편, 서울시는 이번 재위탁을 위한 동의안의 대상에서 충무로영상센터 운영을 제외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¹⁾ 동의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차후 별도의 동의안 제출이 요구됨.
 - 2016년 1월 개정된 조례는 한번 민간위탁의 동의를 받은 사업이라도 민간위탁의 지속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연속하여 위탁하는 경우 4회 차마다 다시 동의를 받도록 하였음.
 - ※ 현재 서울시(조직담당관)는 조례 개정전에 수행 중이던 민간위탁도 신규 민간위탁과 동일하게 보아 4회차, 8회차, 12회차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재위탁동의의 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논란이 있음.
 - ex> 조례시행 이후에 5회차, 6회차, 7회차에 해당되어도 보고로 재위탁이 되며 8회차가 도래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 서울시는 국내 영화사의 90%와 대부분의 영상관련업체 및 시설이 소재하고 있고 국내 영상물 중 40%에 가까운 작품의 촬영이 진행되는 국내 영상산업의 중심지에 해당함.
- 이런 서울시의 환경과 관광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과급력을 갖고 있는 영상산업의 특성 그리고 거대자본에 의하여 운영되는 외국의 영상산업과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영상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영상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과 관련 분야의 네트워크 등이 요구되고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통한 사업 추진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타당한 측면이 있음.

라. 종합의견

- 재위탁을 위한 동의대상인 영화창작공간 운영,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서울배경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은 서로 별개의 사업이므로 각각의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 3개를 하나의 안건으로 제출한 본 동의안은 종전에 3개의 보조금 사업을 동시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한 전례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또한 민간위탁 중인 영상산업 지원사업들의 현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이며 민간에 해당 사업들을 수탁할 만한 우수한 기관들이 없어 재위탁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1.7.]

공모를 통한 수탁기관으로 서울영상위원회가 재선정될 가능성이 많음.

- 종전의 민간위탁 사업자 공모에서도 다른 민간기관의 신청이 없어 사단법인 서울영상위원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음.

- 영상산업 지원사업들에 대한 민간위탁을 서울영상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맡게 되는 것은 타성과 매너리즘 등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어 재위탁 협약 체결시에 사업별로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서울시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특히 2016년 9월 민간위탁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영화창작공간 운영, 해외 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서울배경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이 사업마케팅 및 홍보노력에서 부진한 점수를 받은 바가 있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민간위탁사업 평가결과>

사업명	평가의견
영화창작공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C내 첨단 미디어산업의 핵심 생산기능을 수행하는 영화창작공간은 영화인 이라는 특정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편의성 제공뿐만 아니라, 인큐베이딩의 공간으로서 창작물을 통한 성공사례를 다양한 매체나 뉴스기사, 블로그, 카페, SNS, 지식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함 · 현재의 홍보는 실적물이 미흡함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영상물의 서울 촬영 유치를 위해 세계 속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울을 널리 알리고 해외영화 전문지나 홍보 동영상 제작을 통해 유튜브 홍보, 아리랑 방송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홍보, 해외 영화산업 및 로케이션 전문지를 통한 서울 로케이션 사업 광고 등을 월별, 분기별 연도별 마케팅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해야함. 현재의 해외 홍보는 다소 미약해 보임
서울배경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매체나 뉴스기사, 블로그, 카페, SNS, 지식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하며 현재 홈페이지 구성도 너무 취약해 보임 ·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해 온 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실효성 있는 홍보수단의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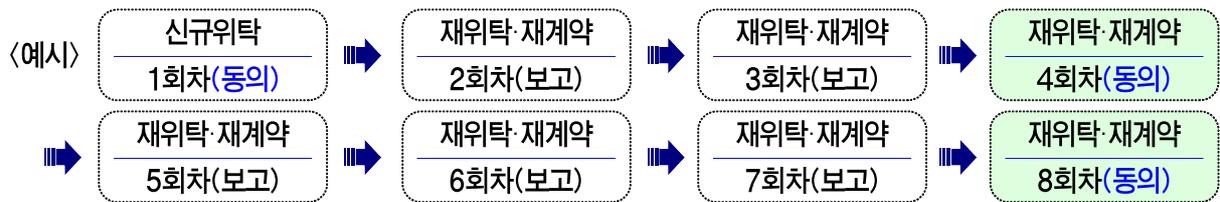
〈참고자료〉

〈서울시의 민간위탁관리 지침 관련 내용〉

4 시의회 보고·동의(주관부서)

○ 재위탁·재계약 시 상임위원회 보고 또는 의회 동의(조례 §4의3)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나,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4, 8, 12...)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최초로 위탁한 경우를 1회차로 계산하며, 수탁기관 변경과 관계없이 각각의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1회로 간주

- 보고 내용 : 민간위탁 중인 대상사무의 지속적 민간위탁 추진
- 보고 방법 : 주관부서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 보고가 아닌 동의의 경우에는 신규 동의안 상정절차와 동일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영상산업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463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영상산업 지원사업은 서울시 영상 및 영화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주요 시책사업인 영화 창작공간의 운영,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사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 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영화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중이며,
- 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명 : 서울특별시 영상산업 지원사업

나. 위탁기간 : 2017. 1. ~ 2019. 12.

※ 의회일정을 감안할 경우(12월 동의안 의결) 기존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신규 위탁운영단체 선정이 곤란하여 기존 위탁운영기관과 90일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위탁사무 연장조치 예정(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조3항)

다. 소요예산 : 3,470백만원 (2016년 기준)

※ 영화창작공간 1,700백만원,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755백만원,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1,015백만원

라.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

○ 영화창작공간 운영

-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80 DMC 첨단산업센터 내
- 연면적 : 4,576㎡
- 입주대상 : 감독·PD(58명), 제작자(17팀), 시나리오 작가(42명)
- 사업내용
 - 시설 및 장비의 운영·관리
 - 입주자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설홍보 및 영화인 네트워크 지원

○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 지원대상 : 해외 장편영화, 다큐멘터리, TV제작물
- 사업내용
 - 해외 또는 국제공동제작 영상물 인센티브(제작비, 스카우팅비) 제공

- 해외작품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참가, 프로젝트 초청투어 등 프로모션 수행
- 로케이션 환경조성(DB구축 및 관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서울배경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 지원대상 : 독립 장·단편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상설관 운영자 등
- 사업내용
 - 서울 배경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및 사후관리
 -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 지원
 - 영화제를 통한 독립영화 제작지원
 - 독립영화 공공상영회 운영

바.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2010. 1. 1. ~ 2011. 04. 07. (사)서울영상위원회
- 2차 : 2011. 4. 8. ~ 2013. 12. 31. (사)서울영상위원회
- 3차 : 2014. 1. 1. ~ 2016. 12. 31. (사)서울영상위원회

사.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서울시 영상산업 지원사업은 영상 및 영화관련 지식이나 추진 노하우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효율적 운영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며,
- 또한, 영상 관련 인프라 운영[영화창작공간]과 지원사무[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서울배경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영화관련 현장경험 및 역량이 축적된 전문단체(법인)을 통해 위탁운영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영상산업진흥조례 제10조(사무의 위탁)
 -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요청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문화융합경제과 영상산업팀 박정주(☎2133-2593)